

감정평가서

건명	주식회사 한효라이프 소유물건(2025타경51387)
의뢰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구형근
감정서번호	광감-250526-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광주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박병훈

(인)

감정평가액	육억육천팔백구십육만일천일백원정(₩668,961,100.-)					
의뢰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구형근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한효라이프 (2025타경51387)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7.30	2025.05.27 ~ 2025.07.30	2025.08.3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44,478	토지	244,478	-	668,961,100
		이	하	여	백	
	합계				₩668,961,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수평리 소재 “수평마을 ”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건입니다.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3.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07.30.일로 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2) 본건의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액을 산출하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사항

- (1) 본 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표시는 귀 제시목록에 의하였습니다.
- (2) 본건 대상 토지 지적의 경계 확인 측량 성과도에 의한 것이 아닌 지적 공부에 의하고 대상 토지의 지적 경계는 주위 지형, 주위 토지 이용상황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등을 이용하여 육안 확인하였는 바, 필요시 별도 확인을 요합니다.
- (3) 본건 기호(2)는 지목이 '도로' 이며, 현황 폭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 되어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본건 기호(3)위치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유실수(감나무 등)가 식재되어 있는 바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본건 기호(4)위치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본건 기호(4)위치상에는 폐가가 소재하나, 관리상태 및 효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평가 제외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지 사진 참조).
- (7) 본건 기호(4)위치상에는 유실수(감나무)가 수주 소재하는 바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 본건 기호(10)은 현황 '자연림' 및 일부 '철탐부지 및 선하지' 로 이용중인 바 '철탐부지 및 선하지' 의 개략적인 면적 확인 후, 해당 필지의 이용상의 제한 등을 감안하여 면적비율에 의한 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본건 기호(1),(4)~(10)은 대부분 자연림상태의 임야로서, 숲이 우거져 해당 필지에 대한 접근 및 진입이 어려워 정확한 분묘의 소재여부 파악이 불가능한 바 경매 진행시 분묘 소재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1. 감정평가대상 토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개별지가 (원/㎡)	비고
1	수평리 산130-2	임야	45,818	자연림	농림지역	맹지	부정형 급경사	877	
2	수평리 산105-1	도로	498	도로등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 급경사	5,640	
3	수평리 산105-2	임야	212	자연림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6,090	
4	수평리 산137-4	임야	15,006	자연림	농림지역, 보전관리	세로(불)	부정형 급경사	963	
5	수평리 산147	임야	36,496	자연림	농림지역, 보전관리	맹지	부정형 급경사	959	
6	수평리 산155-1	임야	42,446	자연림	농림지역, 보전관리	세로(불)	부정형 급경사	944	
7	수평리 산157	임야	18,843	자연림	농림지역, 보전관리	세로(불)	부정형 급경사	999	
8	수평리 산158	임야	5,157	자연림	농림지역	세로(불)	부정형 급경사	1,010	
9	수평리 산169-9	임야	9,886	자연림	농림지역	맹지	부정형 급경사	895	
10	수평리 산176-1	임야	70,116	자연림	보전관리	세로(불)	부정형 급경사	937	

III.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가. 공시지가 기준법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비교표준지의 선정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공시기준일 : 2025.01.01.]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 상 지 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수평리 산149	임야	92,926	자연림	농림지역	세로(불)	부정형 급경사	924	
B	수평리 314-2	답	722	과수원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7,100	
C	수평리 산19	임야	5,653	자연림	계획관리	세로(불)	부정형 급경사	2,890	
D	수평리 산171	임야	15,830	자연림	보전관리	세로(불)	부정형 급경사	966	

(2) 선정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기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3. 시점수정

[전라남도 광양시]

기 간	지가변동률 (%)	비 고
	농림지역	
2025.01.01. ~ 2025.07.30.	2025.01.01.~2025.06.30. : 0.115 2025.07.01.~2025.07.31. : -0.049	
누 계 (2025.01.01.~2025.07.30.)	$(1+0.00115) \times (1-0.00049 \times 30/31)$ ≒ 1.0006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 간	지가변동률 (%)	비 고
	계획관리지역	
2025.01.01. ~ 2025.07.30.	2025.01.01.~2025.06.30. : 0.201 2025.07.01.~2025.07.31. : -0.001	
누 계 (2025.01.01.~2025.07.30.)	$(1+0.00201) \times (1-0.00001 \times 30/31)$ ≒ 1.00200	

기 간	지가변동률 (%)	비 고
	보전관리지역	
2025.01.01. ~ 2025.07.30.	2025.01.01.~2025.06.30. : 0.140 2025.07.01.~2025.07.31. : -0.006	
누 계 (2025.01.01.~2025.07.30.)	$(1+0.00140) \times (1-0.00006 \times 30/31)$ ≒ 1.00134	

4. 지역요인 비교

본건(1),(4)~(9)과 비교표준지 A는 인근지역에 위치하므로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

본건(2)와 비교표준지 B는 인근지역에 위치하므로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

본건(3)과 비교표준지 C는 인근지역에 위치하므로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

본건(10)과 비교표준지 E는 인근지역에 위치하므로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

5.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임야지대

조 건	항 목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접 근 조 건	교통시설, 상가,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환 경 조 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 등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기 타 조 건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본건(1),(4),(5),(7),(9)는 비교 표준지 A에 비해 획지조건(면적 등)에서 다소 열세인 바 종합적으로 고려시 약 5% 열세임.

본건(2)는 비교표준지 B에 비해 행정적 요인 및 이용상황 등에서 다소 열세인 바 종합적으로 고려시 약 70% 열세임.

본건(3)은 비교 표준지 C에 비해 접근 조건 등에서 다소 우세한 바 종합적으로 고려시 약 10% 우세함.

본건(6)는 비교표준지 A에 제반 비교요인에서 유사한 바 종합적으로 고려시 대등함.

본건(8)은 비교표준지 A에 비해 가로조건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에서 다소 열세인 바 종합적으로 고려시 대등함.

본건(10)은 비교표준지 E에 비해 획지조건에서 다소 우세한 바 종합적으로 고려시 약 5%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48, 1991.12.28.), 대법원 판례(1998.07.10.선고 98두 6067, 1993.09.10.선고 92누 16300)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선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2) 인근 매매(거래)사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자료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토지/ 건물	면적 (㎡)	용도 지역	토지단가 (원/㎡)	거래가액	거래시점
#1	수평리 산169-*	임야	6,636	농림지역	1,480	9,820,000	2023.06.22
#2	수평리 산1*	임야	3,898	계획관리	7,696	30,000,000	2021.06.08
#3	수평리 25*	답	155	보전관리	6,451	1,000,000	2022.04.07

(3) 인근 평가전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출처 : 협회 감정평가정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호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토지단가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1	수평리 산169-1*	임야	4,538	농림지역	자연림	1,600	경매
							2020-09-04
%2	수평리 산9*	임야	2,667	계획관리	자연림	7,300	담보
							2020-04-16
%3	수평리 산162-*	임야	2,308	보전관리	자연림	3,580	보상
							2019-08-15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방법

비교 표준지공시지가와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평가전례 등을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한 가격과 비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한 가격과의 비율로 구함.

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1) 기호(1),(4)~(9)의 보정치 산출

구분	기호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보정치
평가 전례	%1	1,600	1.09616	1.00	1.20	2,104	2.28
	1. 시점수정: 광양시 농림지역 2020.09.04.~2025.07.30. 2. 지역요인: 대등함. 3. 개별요인: 획지조건에서 우세함.						
표준지	A	924	1.00068	-	-	924	

2) 기호(2)의 보정치 산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구분	기호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보정치
평가 전례	%2	7,300	1.11876	1.00	0.95	7,758	1.50
	4. 시점수정: 광양시 계획관리지역 2020.04.16.~2025.07.30. 5. 지역요인: 대등함. 6. 개별요인: 획지조건 등에서 열세임.						
표준지	B	17,100	1.00200	-	0.30	5,140	

2) 기호(3)의 보정치 산출

구분	기호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보정치
평가 전례	%3	7,300	1.11876	1.00	0.95	7,758	2.68
	7. 시점수정: 광양시 계획관리지역 2020.04.16.~2025.07.30. 8. 지역요인: 대등함. 9. 개별요인: 획지조건 등에서 열세임.						
표준지	C	2,890	1.00200	-	-	2,895	

3) 기호(10)의 철탐부지 및 선하지 외 부분에 대한 보정치 산출

구분	기호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보정치
평가 전례	%C	3,580	1.10589	1.00	1.10	4,354	4.50
	10. 시점수정: 광양시 보전관리 2019.08.15.~2025.07.30. 11. 지역요인: 대등함. 12. 개별요인: 대등함.						
표준지	D	966	1.00134	-	-	967	

4) 기호(10)의 철탐부지 및 선하지 부분에 대한 보정치 산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구분	기호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보정치
평가 전례	%C	3,580	1.10589	1.00	0.40	1,583	1.63
	13. 시점수정: 광양시 보전관리 2019.08.15.~2025.07.30. 14. 지역요인: 대등함. 15. 개별요인: 행정적 요인에서 우세함.						
표준지	D	966	1.00134	-	-	967	

7. 토지가액의 결정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기타요인을 보정하여 토지가격을 결정함.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924	1.00068	1.00	0.95	2.28	2,003	2,000
2	17,100	1.00200	1.00	0.30	1.50	7,710	7,800
3	2,890	1.00200	1.00	1.10	2.68	8,537	8,500
4	924	1.00068	1.00	0.95	2.28	2,003	2,000
5	924	1.00068	1.00	0.95	2.28	2,003	2,000
6	924	1.00068	1.00	1.00	2.28	2,108	2,100
7	924	1.00068	1.00	0.95	2.28	2,003	2,000
8	924	1.00068	1.00	1.00	2.28	2,108	2,100
9	924	1.00068	1.00	0.95	2.28	2,003	2,000
10	966	1.00134	1.00	1.05	4.50	4,570	4,600
	966	1.00134	1.00	1.05	1.63	1,655	1,700
	가중평균에 의한 단가: $(4,600 \times 65,716/70,116) + (1,700 \times 4,400/70,116) \approx 20,878$						4,4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2. 거래사례 선정: 기호(1),(4)~(9) - 거래사례 #1

기호(2),(3) - 거래사례 #2

기호(10) - 거래사례 #3

3. 시점수정

거래사례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1	2023.06.22. ~ 2025.07.30.	1.01504	광양시, 농림지역
#2	2021.06.08. ~ 2025.07.30.	1.07071	광양시, 계획관리
#3	2021.12.20. ~ 2025.07.30.	1.04278	광양시, 보전관리

4.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은 동일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기호	거래 사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4~9	#1	1.00	1.00	1.10	1.00	1.00	1.10
	본건 (1),(4)~(9)는 거래사례 #1 대비 획지조건에서 다소 우세함.						

기호	거래 사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2	#2	1.00	1.00	1.00	0.30	1.00	0.30
	본건 (2)은 거래사례 #2 대비 행정적 조건에서 다소 열세임.						

기호	거래 사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3	#2	1.00	1.00	0.95	1.00	1.00	0.95
	본건 (3)은 거래사례 #2 대비 획지조건에서 다소 열세임.						

기호	거래 사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0	#3	0.90	1.00	1.00	1.00	1.00	0.90
	본건 (10)는 거래사례 #3 대비 접근조건에서 다소 열세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결정

기호	거래사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1	1,480	1.01504	1.00	1.10	1,652	1,700
2	#2	7,696	1.07071	1.00	0.30	2,472	2,500
3	#2	7,696	1.07071	1.00	0.95	7,828	7,800
4	#1	1,480	1.01504	1.00	1.10	1,652	1,700
5	#1	1,480	1.01504	1.00	1.10	1,652	1,700
6	#1	1,480	1.01504	1.00	1.10	1,652	1,700
7	#1	1,480	1.01504	1.00	1.10	1,652	1,700
8	#1	1,480	1.01504	1.00	1.10	1,652	1,700
9	#1	1,480	1.01504	1.00	1.10	1,652	1,700
10	#3	6,451	1.04278	1.00	0.90	6,054	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적용단가 (원/㎡)	면적 (㎡)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2,000	45,818	91,636,000	
2	7,800	498	3,884,400	
3	8,500	212	1,802,000	
4	2,000	15,006	30,012,000	
5	2,000	36,496	72,992,000	
6	2,100	42,446	89,136,600	
7	2,000	18,843	37,686,000	
8	2,100	5,157	10,829,700	
9	2,000	9,886	19,772,000	
10	4,400	70,116	308,510,400	
합계			666,261,100	

VI. 결정의견

상기 평가선례와 거래사례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수평리	산130-2	임야	농림지역	45,818	45,818	2,000	91,636,000	
2	동소	산105-1	도로	계획관리지역	498	498	7,800	3,884,400	
3	동소	산105-2	임야	계획관리지역	212	212	-	3,002,000	토지: 1,802,000원 수목: 1,200,000원
4	동소	산137-4	임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006	15,006	-	31,512,000	분묘 소재함. 토지: 30,012,000원 수목: 1,500,000원
5	동소	산14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6,496	36,496	2,000	72,992,000	
6	동소	산155-1	임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2,446	42,446	2,100	89,136,600	
7	동소	산157	임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843	18,843	2,000	37,686,000	
8	동소	산158	임야	농림지역	5,157	5,157	2,100	10,829,700	
9	동소	산169-9	임야	농림지역	9,886	9,886	2,000	19,772,000	
10	동소	산176-1	임야	보전관리지역	70,116	70,116	4,400	308,510,400	일부 철탐부지 및 선하지
합 계								₩668,961,100.-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수평리 소재 "수평마을" 남측 및 남서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불편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나, 경사지대 내 임야로서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10) 공히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상태임.
기호(3) 현황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4)~(10) 현황 공히 맹지임.
기호(2) 현황 도로임.
기호(3) 세로(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_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_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_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_제한구역(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_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_제한구역(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_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_제한구역(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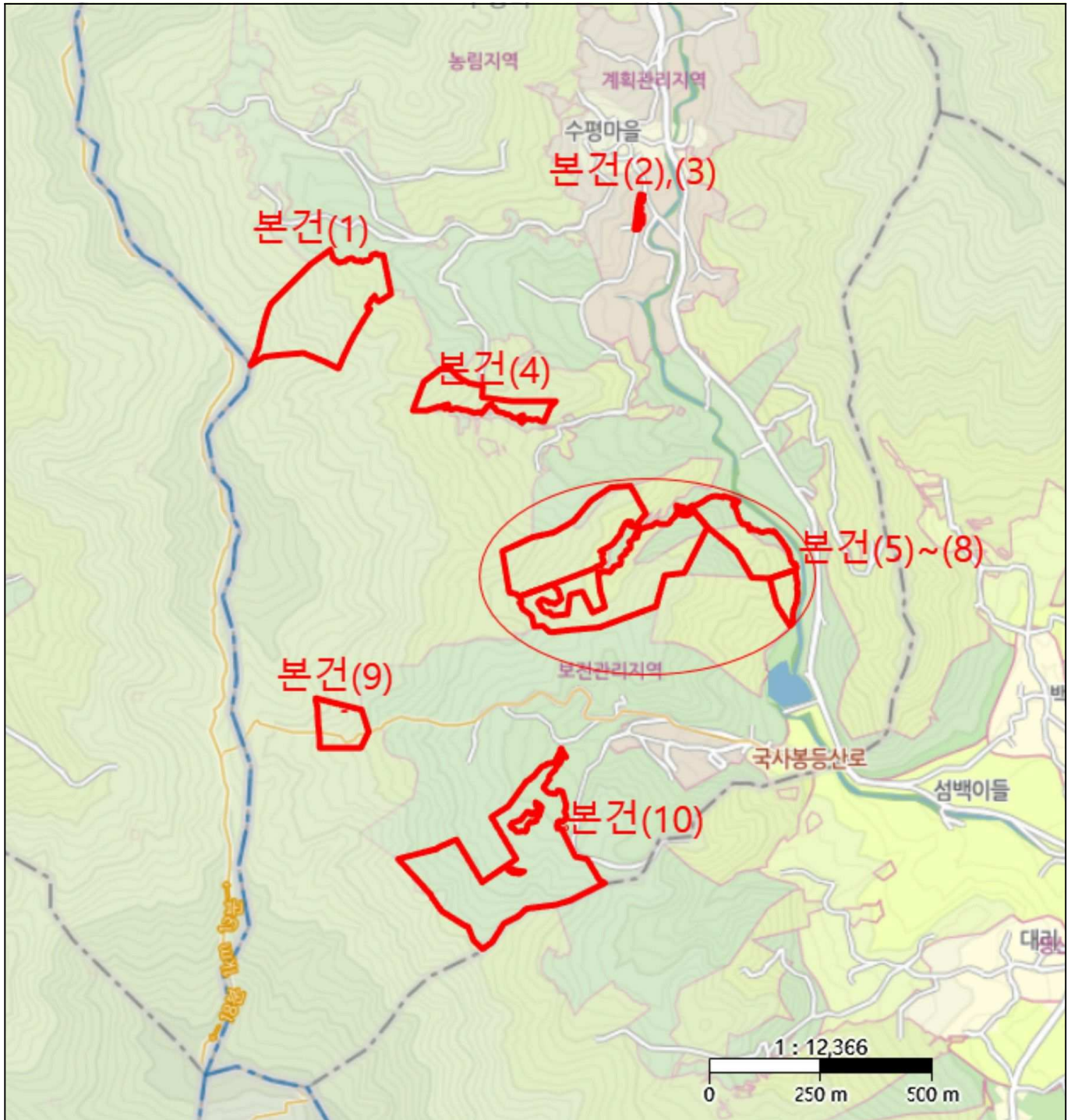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기호(4) 위치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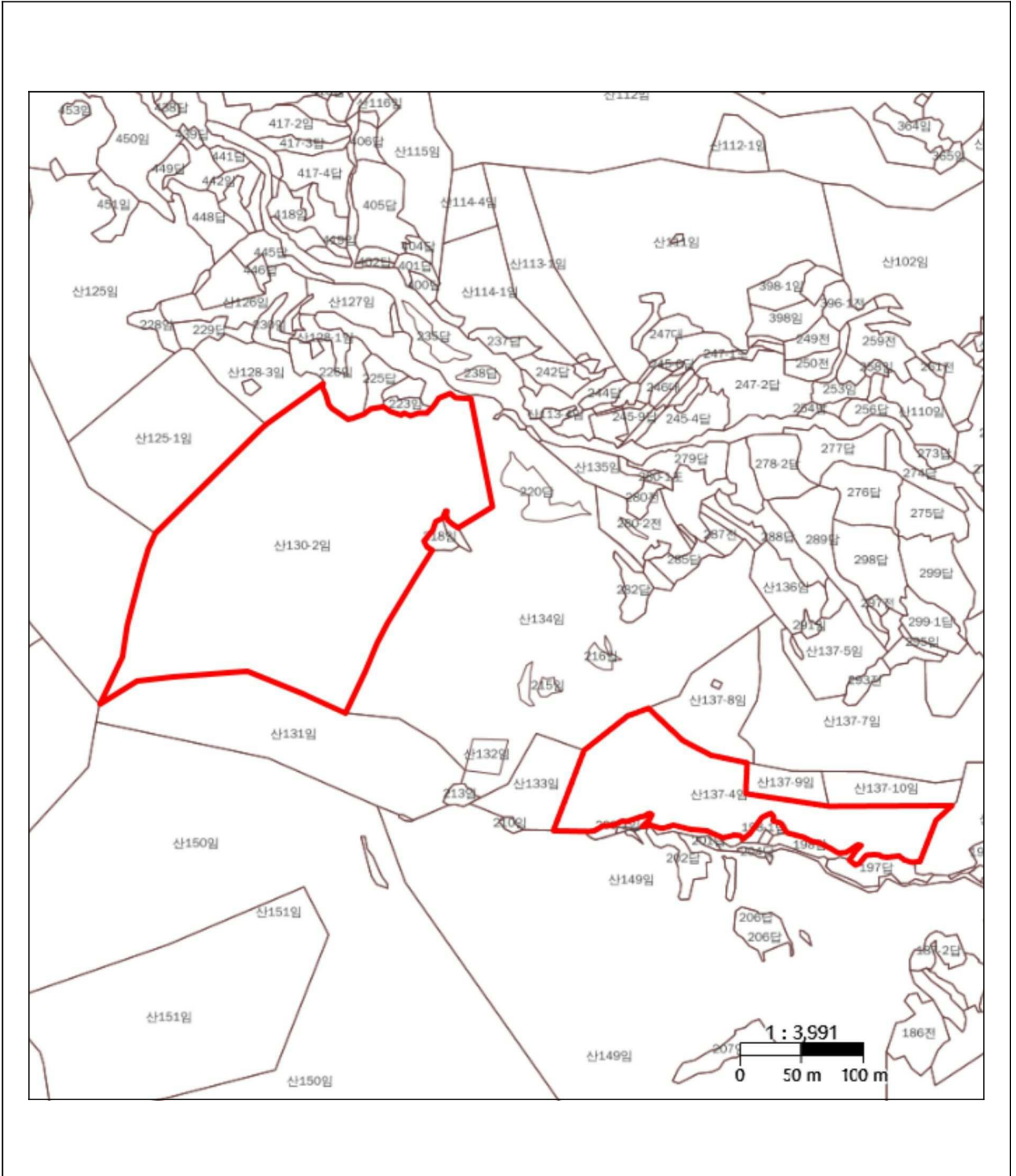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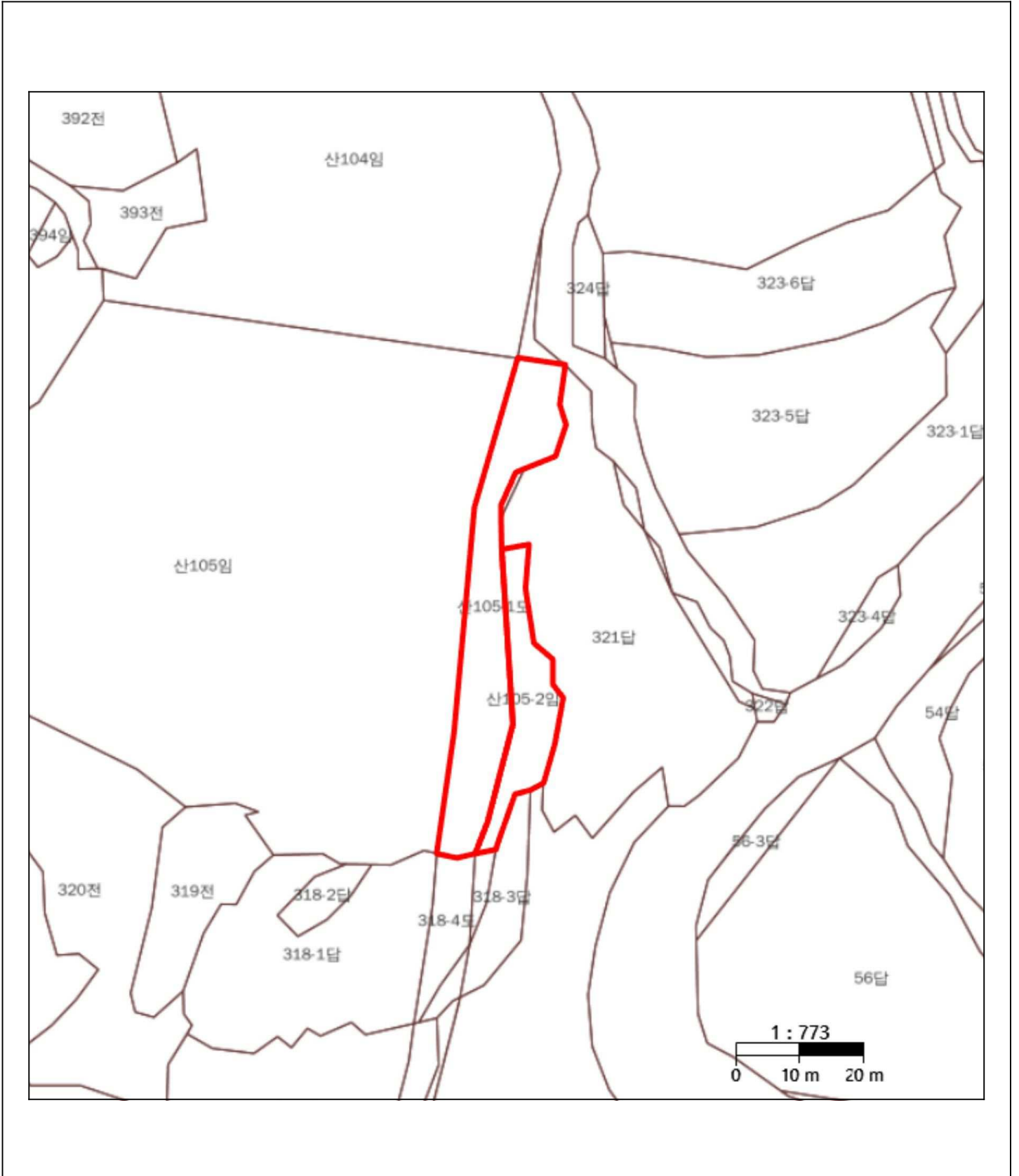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수평리 산130-2외 9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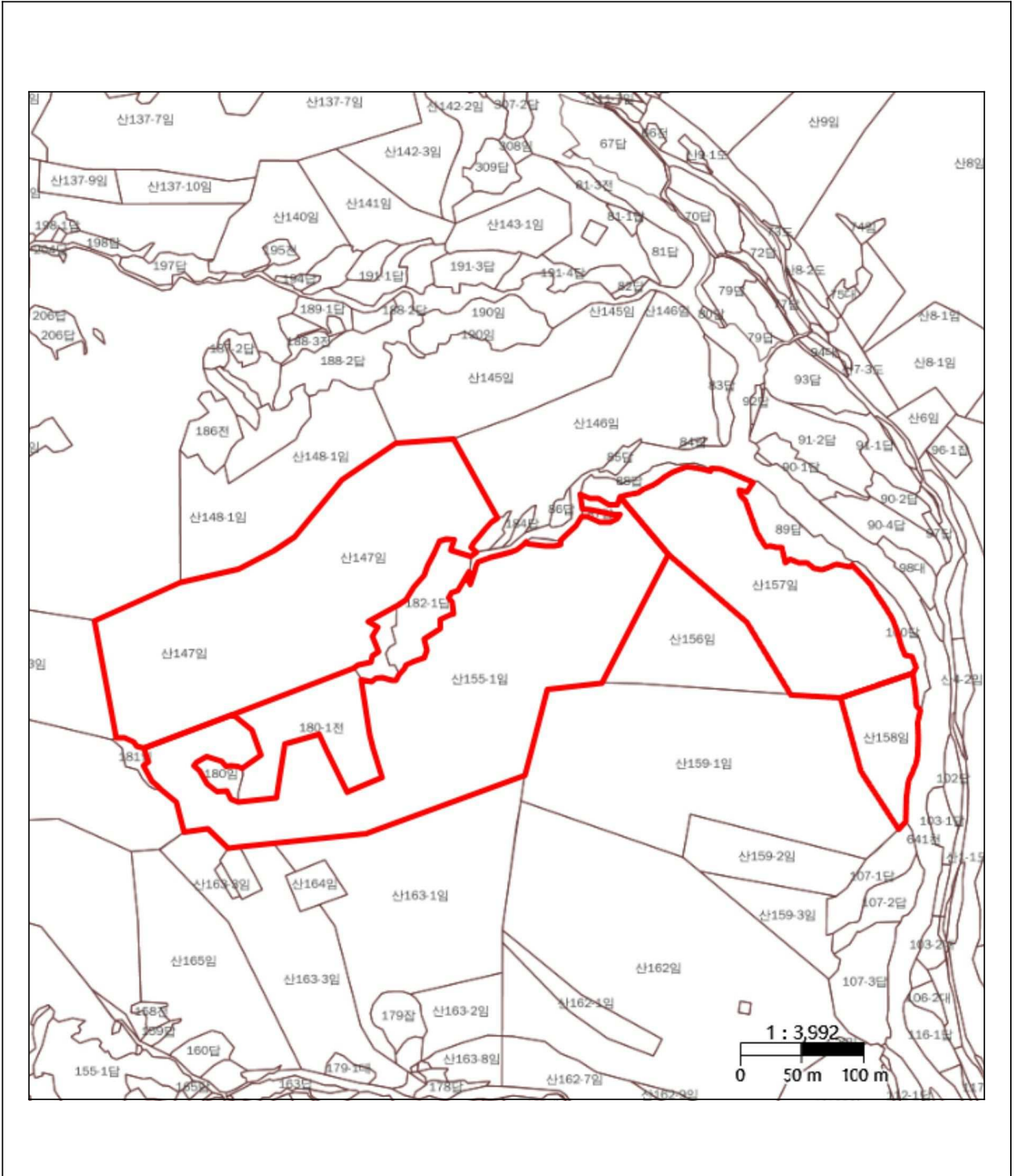
지 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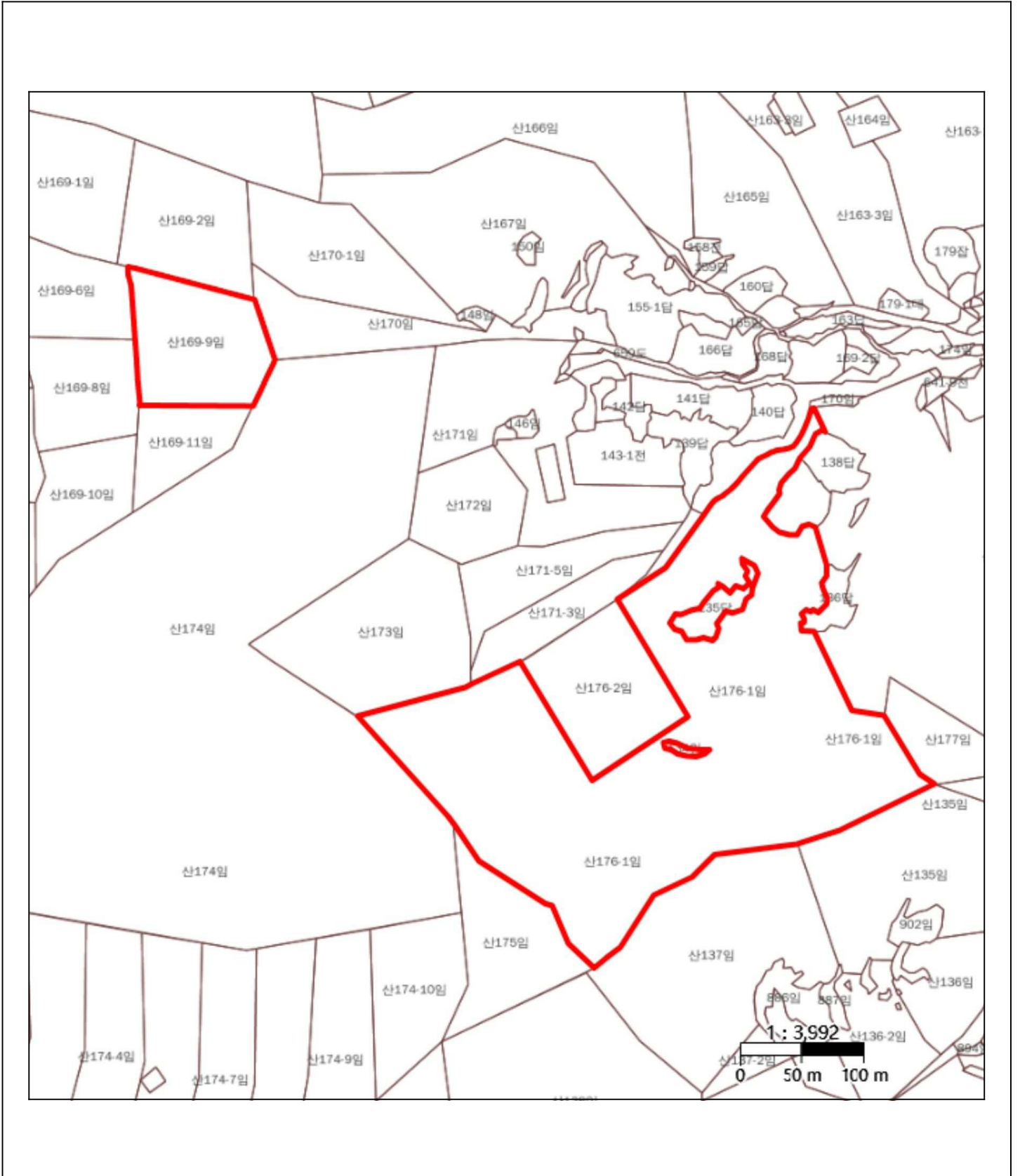
지 적 도



지 적 도



지 적 도





(1)



(2)



(3)



(4)



(4)



(4)



(4)



(5)



(6)



(7), (8)



(9)



(10)



(4)